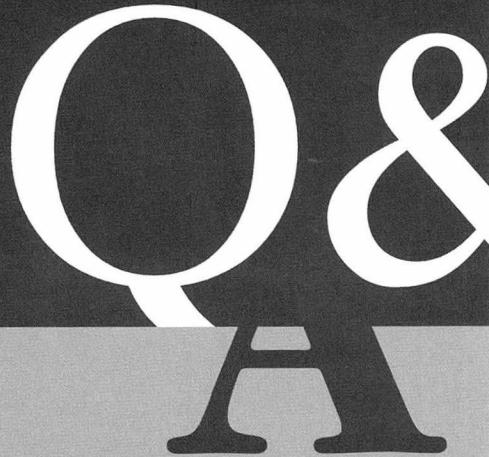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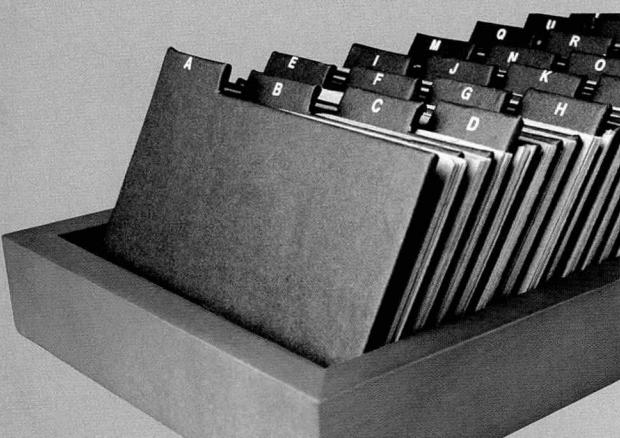


Q & A

궁 · 금 · 합 · 니 · 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장(공장)의 도로 지하에 각종 유틸리티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곳을 소방법에서의 지하구라 할 수 있는지요?

A 소방법에서 소방대상물로 보는 지하구라 함은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길이 50m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Q 지하공동구의 경우 건축법의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받는지요?

A 지하공동구는 건축법의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Q 저희 아파트의 동수는 32개동이고 소화펌프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높이 70m가 넘는 아파트가 21개동이 있습니다. 연결송수관용 펌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각 동별이 아닌 구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연결송수관용 펌프는 설비별로 1개씩 설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와 마찬가지로 기계실에 펌프를 두고 배관을 각 동마다 연결하면 됩니다.

Q 소방법 상 자체점검 중 상반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방화관리자가 할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1급 대상물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또, 소방서에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할 의무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상반기 작동기능점검은 1급 대상물의 경우에도 방화관리자가 할 수 있으며, 해당 점검기기가 있어야 합니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